

학교법인 송원학원

제 442회 이사회 회의록

구분	이사	감사
임원정수	8인	2인
재적임원	8인	2인
참석임원	6인	1인

1. 일시 : 2023년 11월 29일(수) 11 : 00 (회의소집통보일 : 2023년 11월 20일)

2. 장소 : 이사장실

3. 임원 출결 사항

○ 참석임원

- 이사 (6인) : 고경주, 최승한, 이정주, 손혜란, 김옥현, 김남경
- 감사 (1인) : 정진택

○ 불참임원

- 이사 (2인) : 류중일, 송기석
- 감사 (1인) : 이승연

4. 안건

(1) 의안 제 1611호 정관 변경(안)

5. 의결사항

(1)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법령에 의하여 정관을 정비【제39조의 8 (기간제교원), 부칙 (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)】하여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관을 변경하다.

- 주요 변경 사항

- 기간제교원 임용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【이에 따른 각 호 정비】
- 기간제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6. 회의내용

이사장 고경주 :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어서 제 442회 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.

(팀장 이정철 제 441회 전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다.)

이사장 고경주 : 제 441회 이사회 회의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.

(참석이사 전원 이의 “없습니다.”)

이사장 고경주 :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으시다 하셨습니다. 제 441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를 통과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 442회 이사회 의안을 상정합니다.

의안 제 1611호 정관 변경(안)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팀장 이정철 신·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하고, 제안설명을 하다.)

이 사 최승한 : 정관 변경(안)을 살펴본 결과 그 변경 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법령에 의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법인은 산하 각급학교에서 결원보충·휴직대체 등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법인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님이 임용 발령을 하였습니다.

그러나, 각급학교에서 기간제교원 임용 시 이사회 소집 및 의결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, 기간제교원 임용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정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.

이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법령에 의하면 기간제교원 임용 권한은 우리 법인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정관을 정비【제39조의 8 (기간제교원), 부칙 (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)】하는게 타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료되므로, 이는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.

이 사 김옥현 :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간제교원 임용만큼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최승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.
(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.)

이사장 고경주 :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정관 변경(안)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이어서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 하실 이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사 이정주 :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로 최승한·김옥현·김남경 이사를 추천합니다.

이 사 최승한 : 이정주 이사의 추천에 동의합니다.
(참석이사 전원 “찬성입니다” 하다.)

이사장 고경주 :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로 최승한·김옥현·김남경 이사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끝으로 본 법인 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참석이사 전원 “없습니다.”)

이사장 고경주 : 감사합니다.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.

이상으로써 제 442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

후일 증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사님 및 감사님 전원 회의록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폐회 : 11 : 45

학교법인 송원학원

이사장 고정주 (서명)

고정주

이 사 최승한 (서명)

최승한

이 사 이정주 (서명)

이정주

이 사 손혜란 (서명)

손혜란

이 사 김옥현 (서명)

김옥현

이 사 김남경 (서명)

김남경

감 사 정진택 (서명)

정진택

송원학원

정

학교법인 송원학원 신·구조문 대비표

연 번	현 행(구)	개 정(신)	비고 (법령검토)
1	제39조의 8 (기간제교원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 할 수 있다. 1.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. 교원이 파견·연수·정직·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. 임용 예정직에 <u>상용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</u> 4. <u>교육경력·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 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정정심사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</u> 5. “삭제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. ③ 신설	제39조의 8 (기간제교원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 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.</u> 1. 교원이 제40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. 교원이 파견·연수·정직·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. 파면·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.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[좌측 상동] ③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	조항 수정 사립학교법 제54조의4(기간제교원) ①항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(이하 “기간제교원”이라 한다)을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1.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. 교원이 파견·연수·정직·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. 파면·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.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- 반영
2	(신설)	부칙 (시행일) ① 이 정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신설 수정된 정관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 신설